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북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지윤

전화 02-3399-43866 / 팩스 02-3399-4801

## 보 도 자 료

2020. 3. 2.(월)

제 목

### 서민 다중 상대 다단계 사기범이 은닉한 금괴 등 1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- 2명 구속 기소, 3명 불구속 기소 -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(부장검사 한태화)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한 다음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자본금 200억 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후, 19일 만에 약 3,600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'주식 구입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 합병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.'고 속여 깡통 주식 구입자금 명목으로 약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중 137억 원 상당을 은닉한 일당 3명 등 총 5명을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,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또한, 피고인들이 은닉한 56억 원 상당 금괴, 45억 원 상당 차명 예금, 18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, 18억 원 상당 현금 등 총 137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, 개정된 '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'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압수하거나 추징보전하였음
- 휴대폰 포렌식, 계좌추적,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범행 전모를 밝히고 은닉한 범죄수익 대부분을 환수하였음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다단계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

##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● 피고인

- A(남, 51세) 등 5명

### ● 공소사실 요지

- '19. 3.경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1억 5,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, 법원 등기소에 순자산으로 자본금 20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재무제표를 첨부하면서 甲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마침
  - ☞ 위계공무집행방해
- '19. 4. 2. ~ 4. 20.경 총 3,664명의 피해자들에게 '甲 회사 주식 구입시 원금을 보장하고,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3~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155억 원 상당 편취
  - ☞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- '19. 4. 15. ~ 7. 3.경 위 편취금으로 56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고, 45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, 18억 원 상당의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으로 은닉
  - ☞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※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'피고인들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 요지' 참조

## 2 수사경과

- '20. 1. ~ A 별건 구속 공판 중 범행단서 확인하고 수사착수
- '20. 2. 7. A, B, C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인지
- '20. 2. 12. B, C 체포 및 은신처 등 압수수색
- '20. 2. 13. 기소전 추정보전 청구 인용(차명예금 45억 원 상당)
- '20. 2. 15. B, C 각 구속영장 발부
- '20. 2. 22. 56억 원 상당 금괴 및 18억원 상당 현금 압수
- '20. 2. 24. 기소전 추정보전 청구 인용(차명부동산 18억 원 상당)
- '20. 2. 26. A, D, E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인지
- '20. 3. 2. A 등 5명 일괄 기소

## 3

# 수사결과

### 1. 수사착수 경위

- 피고인 A, B에 대한 별건 공판 중 자본금 200억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기신청 서류를 확보하여 본건 범행단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함
- 또한, 본건 수사 착수 당시 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금괴와 부동산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 병행함

### 2. 범행의 수법

- 피고인 A, D, E는 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최초 설립등기시와 달리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등기시에는 승계하는 자본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,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혈값에 인수한 후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첨부한 다음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우량 주식회사의 외관을 형성함

※ 피고인 A는 자본금 200억 원의 甲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건 범행에 이용 후, 추가 범행을 위해 빈껍데기 영농조합법인을 자본금 127억 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었음


- 피고인 A, B는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, '원금을 보장하고 상장회사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올려 3~10배까지 고수익을 줄 수 있다'고 홍보하며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함
- 또한, 편취금으로 금괴,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함

### 3. 다수의 피해자 상대 서민생활침해사범 엄단

- 본 사건은 주식에 문외한인 일반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우량 주식회사 외관을 가장하여 다단계 수법으로 불과 19일 만에 약 3,600여 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서민생활침해 사건임
- 검찰은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,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, 문서감정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히고 엄단함

## 4

###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

-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(이하 '부패재산몰수법'이라 함)이 '19. 8. 20.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사기 범행 등 서민다중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수단이 마련됨
  - 본 건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.목에 의한 '범죄피해재산'에 해당하고,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특례규정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해 몰수·추징 가능
-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반환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, 범죄수익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추적,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로, 137억 원 상당 은닉재산을 압수하거나 추정보전함
  - 금괴 56억 원 상당과 현금 18억 원 상당은 범죄수익 은닉만을 위해 임차한 빈집에 보관하였고, 45억 원 상당 예금과 18억 원 상당 부동산은 여러 지인들의 명의로 은닉한 사실도 확인하였음
-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한 수사로 범죄피해재산 약 155억 원 중 상당 부분인 137억원 상당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였음
- 향후,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·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,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속·공평하게 반환할 예정임 

[별지]

## 피고인들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신분	공소사실 요지	비고
1	A (51세)	甲 주식회사 대표	<p>B와 공모하여, '19. 4. 2. ~ 4. 20.경 자본금 200억 원의 회사를 가장한 甲 주식회사 주식을 구입할 경우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올려 원금 및 투자금의 3 ~ 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억 원 상당을 편취</p> <p><b>[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</b></p> <p>B와 공모하여 '19. 4. 15. ~ 7. 3.경 위 편취금으로 56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고, 45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, C와 공모하여, 위 금괴를 빈집에 보관하고 18억 원 상당의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</p> <p><b>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</b></p> <p>D, E와 공모하여, '19. 3.경 출자금이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자본금 200억 원의 주식회사로 둔갑시킬 목적으로 등기소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을 甲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내용의 설립등기를 마침</p> <p><b>[위계공무집행방해]</b></p>	2020. 3. 2. 불구속 기소 (2019. 7. 2. 별건 구속)
2	B (46세)	甲 주식회사 관리이사	<p>A와 공모하여, '19. 4. 2. ~ 4. 20.경 위와 같이 주식구입 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억 원 상당을 편취</p> <p><b>[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</b></p> <p>A와 공모하여, '19. 4. 15. ~ 4. 25.경 위 편취금으로 56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고, 45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 은닉</p> <p><b>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</b></p>	2020. 3. 2. 구속 기소
3	C (42세)	A 동생	<p>A와 공모하여, '19. 4. 15. ~ 7. 3.경 범죄수익인 56억 원 상당의 금괴, 1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빈집에 보관하고 18억 원 상당의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은닉</p> <p><b>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</b></p>	2020. 3. 2. 구속 기소
4	D (67세)	알선업자	<p>A와 공모하여, '19. 3.경 위와 같이 출자금이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甲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내용의 설립등기를 마침</p> <p><b>[위계공무집행방해]</b></p>	2020. 3. 2. 불구속 기소
5	E (49세)	법무사 사무장		2020. 3. 2. 불구속 기소